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건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및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및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본문 제4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조례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 등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 검토결과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화재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